

신뢰성보험 보상규정

제 정 : 2003. . .

제1차개정 : 2010. 7. 6

제 1 장 총 칙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뢰성보험(이하 “보험이라 한다)의 손해사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적용원칙) 이 보험의 손해사정, 보상 및 보상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무역보험법령과 약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조(이사회 의결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를 받아야 한다.

1. 동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한 지급할 보험금이 30억원(재보험금을 제외한 금액)을 초과하는 사고건
2. 보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 2 장 사고접수 및 조사

제 4조(사고접수)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사고발생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전산입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② 재보험 출재건이 사고발생통지된 경우 재보험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향후 진행사항 및 손해액 결정 등에 대해 사전협의한다.

제 5조(사고조사의 실시) ① 사고발생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사고조사를 실시한다.

② 제1항의 사고조사는 국내조사와 국외조사로 구분한다.

제 6조(손해사정의 의뢰 등) ① 사고조사 및 손해사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사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손해사정인의 선임 방법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7조(사고조사결과의 처리) 사고조사를 진행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보험약관상 면·부책 여부를 판정한다.

1. 보상
2. 면책

제 8조(손해액 산정) 사고조사결과 면책 판정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사정인 등의 보고서를 근거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한다.

제 9조(재보험자앞 통지) 재보험출재건인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에 대하여 재보험자에게 통지하고 향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재보험자와 협의한다.

제 3 장 합의 및 소송

제 10조(합의진행) ① 산출된 손해배상금에 따라 손해사정인 등에게 피해자 등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도록 요청한다.

② 제1항의 합의가 종결되는 경우 손해사정인 등으로부터 합의서, 권리포기서 등을 받는다.

제 11조(소송) 제10조에 의한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등과 협의하여 변호사(손해사정인을 포함한다)를 선임하여 소송진행에 대비한다.

제 4 장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등

제 12조(보험금 청구 및 지급등) ① 제10조 및 제11조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사 등을 마치기 전에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정한 보험금의 50%상당액을 가지급할 수 있다.

제 13조(재보험금 수령)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로 재보험 출재가 있는 경우에는 재보험자앞 보험금 지급사실을 통보하고 재보험금을 수령한다.

제 5 장 사후관리

제 14조(대위권 등의 취득) ① 보험금을 지급한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잔존물(이 보험의 목적에 한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잔존물의 권리를 취득한다.

② 제1항 외에 피보험자가 약관 제24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 권리를 취득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취득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로 한다.

제 15조(채권보전조치) 제14조 제2항의 권리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조사결과 제3자에 대한 소유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회수실익, 예상 회수가액, 환가의 용이성등을 검토하여 가압류,가처분 기타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.

제 16조(잔존물의 처분) 제14조 제1항의 잔존물에 대한 매각등의 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 후 매각대금등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17조(채권보전조치의 해제) 채권보전조치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전액 회수되거나 기존 채권보전조치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취한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.

제 18조(준용)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사후관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경우에 따른다.

1. 제3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구상권 관리규정을 준용한다.
2. 제3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외채권 관리규정을 준용한다.

제 6 장 보 칙

제 19조(서식의 제정 및 개폐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의 제정,개폐는 이 보험 보상담당본부장에게 위임한다.

제 20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"신뢰정보험 보상요강"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(제정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